학사조직 개편 및 학생정원조정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.) 교육의 내실화와 특성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칙 제2조 및 제4조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'학사조직 개편'이라 함은 학칙 제2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, 학부, 학과 또는 전공이 편성된 조직에 대하여 명칭변경, 소속변경, 계열변경, 신설, 통합 및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.
 - 2. '학생정원조정'은 모집단위의 입학정원(이하"정원"이라 한다.)을 증원 또는 감원하는 것을 말한다.
 - 3. '모집단위'라 함은 학생을 모집할 때 기초가 되는 단위로 학부, 학과, 전공 등을 말한다.
- 제3조(학사조직 개편 및 학생정원조정위원회) ① 학사조직 개편 및 정원조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조직 개편 및 학생정원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입학홍보처장, 각 단과대학 (독립학부 포함)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단과대학(독립학부 포함)별 1명의 교원을 추천 받아 총장이 임명하는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18.7.1., 2019.10.1., 2021.6.1., 2022.4.1.)
 -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, 서기 1인을 두며,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19.9.25.)
 -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 - 1. 학사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
 - 2.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
 - 3. 모집단위 평가에 관한 사항
 - 4. 학사조직 개편 및 학생정원조정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 - 5. 학사조직 개편 및 정원조정으로 인한 지원에 관한 사항
 - 6. 그 밖에 학사조직 개편 및 정원조정과 관련한 사항
- 제4조(위원회 회의 및 의결) ① 위원회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 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/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5조(절차) 학사조직 개편 및 정원조정은 각 학사조직의 요청 또는 대학의 정책적 필요시 실

시하며,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.

- 1. 모집단위 평가 실시
- 2. 학사조직 및 정원조정 계획 수립 및 심의
- 3. 모집단위 의견수렴
- 4. 위원회 심의
- 5. 학칙개정안 교무위원회 심의
- 6. 학칙개정안 대학평의원회 심의
- 7. 정관시행세칙 제5조에 규정한 총 정원조정 및 학과, 학부, 대학의 개폐에 관한 사항일 경우 법인이사회 의결
- 8. 관할청 보고 또는 승인(필요시)
- 제6조(모집단위 평가 및 조정계획 수립) ① 대학은 전 모집단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최근 2년간 대학정보공시지표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. (개정 2018.12.21.)
 - 1. 정원내 신입생충원율
 - 2. 정원내 재학생충원율(단, 신설 후 6년 이내 모집단위의 공시 기준일 현재 군 휴학생은 재학생으로 간주한다.)
 - 3. 최근 3년 이내 증원한 모집단위의 경우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. (신설 2023.06.29.)
 - ① 정워내 신입생충원율: 최근 3년 모집정원의 평균을 당해 모집정원으로 적용한다.
 - ② 정원내 재학생충원율: 증원 후 2년간 편제정원은 증원 전 편제정원을 적용한다.
 - 4. 신설, 통폐합, 분리 등으로 지표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(신설 2023.06.29.)
 - ② (삭제 2023.06.29.)
 - ③ 대학은 평가결과를 공개하고, 학사조직 및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, 각 모집단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- 제7조(학사조직 명칭변경 등) 학사조직의 명칭, 소속, 계열변경과 단과대학(독립학부를 포함한다.), 학부의 통폐합은 학사조직의 요청이 있거나, 대학의 정책적 필요시 실시하며, 정부정책,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심의하여 실시한다.
- 제8조(모집단위 신설) ① 모집단위의 신설은 정부정책, 대학 특성화 정책에 부합하고, 산업과 사회의 수요를 반영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공분야에 한하여 총 입학정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.
 - ② 모집단위의 신설은 학사조직의 요청이 있거나, 대학의 정책적 필요시 시행하며, 추진 주체는 [별지 제1호 서식]의 신설제안서를 기획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20.03.01., 2021.6.1.)
- 제9조(모집단위 통합) ① 모집단위의 통합은 각 모집단위의 요청이 있거나 대학의 정책적 필요시 2개 이상의 모집단위가 유사하거나 융복합이 가능하고,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.

- ②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모집단위 평가결과 정원내 신입생충원율이 90% 미만이거나 정원내 재학생충원율이 90% 미만인 모집단위에 대하여는 유사 모집단위로 통합을 권고할 수있다. (개정 2018.12.21.)
- 제10조(모집단위 폐지) ① 모집단위의 폐지는 제6조에 따른 모집단위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. (개정 2018.12.21.)
 - 1. 모집단위의 정원내 신입생충원율이 90% 미만이거나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이 90% 미만으로 2년간 지속될 경우
 - 2. 삭제
 - ② 위원회는 폐지대상 모집단위에 대하여 '모집단위 발전계획서'를 제출받아 심의하고,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폐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, 차년도 평가시 모집단위 발전계획서 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모집단위를 폐지할 수 있다. (개정 2018.12.21.)
 - ③ 폐지되는 모집단위 소속 전임교원의 신분은 유사 모집단위로의 소속변경과 전공전환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되, 관련 법령, 정관 및 교원인사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.
- 제11조(모집단위 최소정원) 모집단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정원은 계열 구분 없이 3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, 대학의 정책적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감할 수 있다.
- 제12조(모집단위 정원의 중원과 감원)_① 위원회는 모집단위의 요청 또는 정책적 필요시 정부정책, 대학 특성화 정책에 부합하고, 산업과 사회의 수요를 반영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공분야에 한하여 정원을 중원 또는 감원 할 수 있다. (개정 2023.06.29.) ② (삭제 2023.06.29.)
- 제12조의2(모집단위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순서) 모집단위 평가결과 정원내 신입생충원율이 90% 미만이거나 정원내 재학생충원율이 90% 미만인 모집단위에 대한 조치는 감원 또는 통합, 폐지의 순서로 진행한다. (신설 2018.12.21.)
- 제13조(조치사항 및 특별지원) ① 대학은 학사조직 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소속 학생의 불이익이 없도록 학칙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대학은 모집단위 신설, 통합 및 폐지에 따른 모집단위의 경쟁력 확보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관련 모집단위 및 유관부서 협의를 거쳐 행·재정적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14조(전임교원 전공전환) ① 학사조직 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전임교원의 전공전환이 필요할 경우 「교원연구년제규정」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교원연구년제를 신청하여 전공전환을 할 수 있다.
 - ② 총장은 전공전환을 위한 연구년의 경우 「교원연구년제규정」 제2조 내지 제4조의 연구년 기간, 자격 및 인원 배분 에 관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

구년을 허가할 수 있다.

③ 전공전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5조(세부사항) 학사조직 개편 및 정원조정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2015학년도 학사조직 개편 및 정원조정에 대한 경과조치) 2015학년도 학사조직 개편 및 정원조정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2016학년도 학사조직 개편 및 정원조정에 대한 적용례) ① 이 규정은 2016학년도 학사조직 개편 및 정원조정부터 적용한다.

② 2016학년도 정원조정 시 모집단위 평가를 위한 가중치는 제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, 2014학년도 실적을 70%, 2013학년도 실적을 30%를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하되, 2019학년도 모집단위 평가부터 적용하며, 2021학년도 학사조직 개편 및 학생정원조정 시에 적용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신설 또는 통합한 모집단위가 제10조의 폐지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설 또는 통합 후 6년 이내의 기간 동안은 <표 1>과 같이 모집단위 폐지를 유예할수 있다.

<표 1> 신설 또는 통합 모집단위의 폐지 유	예 가능 학녀도	Ē.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

연번	모집단위	신설/통합	신설/통합 년도	유예 가능 학년도
1	기계공학부	통합	2016	2021학년도까지
2	전자및의용공학부	통합	2017	2022학년도까지
3	디지털미디어공학부	통합	2017	2022학년도까지
4	국제물류학과	통합	2017	2022학년도까지
5	복지건강학부	통합	2017	2022학년도까지
6	글로벌문화콘텐츠학부	통합	2017	2022학년도까지
7	자율융합공학부	신설	2017	2022학년도까지
8	군사학과	신설	2014	2019학년도까지

이 규정은 201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	
	부 칙
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	
	부 칙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	
	부 칙
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	
	부 칙
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	
	<u>부 칙</u>

이 규정은 2023년 06 29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모집단위 신설 제안서

- 1. 신설 모집단위명(영문명)
- 2. 신설 사유
- 3. 신설 필요성 분석
 - ① 정부 및 부울경 자치단체 정책
 - ② 산업과 사회의 수요
 - ③ 대학 특성화 정책과 부합성
 - ④ 대학 경쟁력 강화에 기여도
- 4. 타 대학 유사학과 현황분석(3개 대학 이상)
 - ① 최근 3년간 타 대학 유사학과의 충원률
 - ② 최근 3년간 타 대학 유사학과의 취업률
 - ③ 타 대학 유사학과의 교육과정
- 5. 모집단위 신설 세부계획
- ① 신설학과의 교육과정 및 이수체계도
- ② 졸업 후 진로 및 취득 자격
- ③ 신설학과 교원 자격 및 소요 현황
- 가. 학내 교원 중 신설학과에 부합되는 교원 현황
- 나. 연차별 교원 소요현황
- ④ 편제 완성년도까지의 실험·실습실 및 기자재 소요 현황
- ⑤ 신설학과 계열 및 학위명
- ⑥ 신설학과 예산 소요 현황